



: 2020-09-03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구합51154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청장

변 론 종 결 2020. 6. 18.

판 결 선 고 2020. 7.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24. 원고에게 한 취득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구 B 전 3,8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7. 1. 6. C으로부터 원고에게로 2017. 1. 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 1,037,388,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31,121,640원, 농어촌특별세 2,074,770원, 지방교육세 2,074,770원 합계 35,271,18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9. 8. 1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에 따라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9. 24.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10. 1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 13.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4, 15,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일을 기준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본문의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등 참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본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을 요건으로 들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자경농민으로 감면을 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인 '직접 농업에 종사할 것'라 함은 반드시 전업농일 필요는 없으나, 농업이 주된 직업이 아니면서 부업 내지 주말에만 농사를 지은 경우나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여기서 말하는 직접 농사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9271 판결 등 참조).



한편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비과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을 2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인 2017. 1. 6. 현재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된 직업으로 농업에 종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2016. 8. 26. 인천 중구 D아파트, E호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고, 그 이전에는 이 사건 토지와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수원시 권선구 F건물, G호'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였다.

②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 이전 2년간 직접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농자재 구입이나 농기계 임대 관련 영수증, 이 사건 토지에서 재배된 농산물 매출 거래내역 등의 객관적,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③ 원고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증여자이자 원고의 시어머니인 C 모두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피고로부터 직불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④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 당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가 없었고, 취득일 이후인 2019. 6. 4.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농업경영체 신규등록을 마쳤다.



: 2020-09-03

⑤ 원고 명의로 된 '인천 중구 H 전 631㎡'에 관한 국유재산 대부계약일(2017. 6. 27.)과 'I' 관련 건축허가 변경허가일(2017. 11. 13.) 모두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인 2017. 1. 6. 이후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농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 2020-09-03

2.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

<끝>